

# 내란 위기에 아직 끝까지

끝나지 않았 습니다!

## 윤석열 탄핵의 3대 걸림돌

- 1 내란수괴 윤석열의 수사 방해**
  - 압수수색, 소환조사 불응
  - 헌재 재판관련 우편 송달거부
- 2 내란공범 국힘의 헌재 방해**
  -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보이콧
  -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도록 억지 주장
- 3 한덕수 권한대행의 내란 방어**
  - 내란 특검 시간끌기
  - 상설특검후보 추천 의리 불법 지연
  - 안하무인 대통령 경호처 방치

## 탄핵 지연 시 대한민국 3대 위기

- 1 대응불가 경제충격**
  - 환율 1450원 돌파, 저성장 고착화
  - 국민연금 국민혈세로 환율·증시방어 지속불가
- 2 공백방치 안보위기**
  - 'NLL서 북한 공격 유도' 메모 확인 (외환죄 규명 지연)
  - 통일부 자제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 지속 (접경지역 위험 계속)
- 3 회복불가 외교위기**
  - 美 안보보좌관 "법원을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아냐"
  - EU "한국, 헌법에 따라 정치위기 신속·질서있게 해결되길"



## ‘위헌 불법 내란 행위’인 이유!

### 1.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 위반

- 국회의 합법적 권한인 탄핵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유로 선포  
(헌법 제77조 제1항 :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엄격히 규정)

### 2. 헌법상 비상계엄 절차 위반

- 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의 절차적·실체적 하자 : 회의록 無, 5분 진행  
(헌법 제89조, 계엄법 제2조 :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)
-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음(헌법 제77조 제4항 : 지체없이 통고 의무)
-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즉시 해제하지 않음: 1시간 후 카톡으로 국무회의 소집 통보 등  
(계엄법 제11조 : 지체없이 해제 의무)

### 3. 위헌적 계엄 포고령

계엄 포고령 제1호 제1항

국회, 지방의회,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,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.

-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와 정당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 無
- 오히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보장(계엄법 제13조). 국회의 계엄해제권 부여(헌법 제77조 5항)

### 4. 무력을 동원한 헌법기관 침탈 : 내란죄·국헌문란죄

형법 제87조(내란)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처벌

형법 제91조(국헌문란의 정의)

1.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
2.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

- 무장군인과 경찰 동원하여 국회, 선관위 장악 시도
- 국회의장, 여야 당대표, 중앙선관위원장(現대법관), 판사 등 체포 계획
- 윤석열이 직접 국회의원 체포 지시  
(곽종근 특전사령관,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, 조지호 경찰청장, 홍장원 국정원1차장 증언)